

거창군결산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 - 34
----------	-----------

발의연월일 2006년 7 월 20 일

발 의 자 이수정 의원 외 9 인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 제3호 및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에 따라 “회기수당”이 “월정수당”으로 전환됨으로써
- 예산결산감사 위원에 대한 여비 및 일비의 지급기준을 재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명 “거창군결산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” 를 “거창군 결산감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띄어 쓰기 기준에 맞게 함
-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앞뒤 낫표(「)를 사용하여 구분되게 함
 - ⇒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(안 제1조)
 - ⇒ “지방공기업법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”으로 (안 제7조)
 - ⇒ “지방자치법시행령”을 “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”으로 함(안 제9조)
-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는 1일당 10만원을 지급함(안 제13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신 · 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3호
-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

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, 제3조제3항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 「지방자치법」 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지방공기업법”을 “ 「지방공기업법」 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지방자치법시행령”을 “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”으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지급기준) 여비는 「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일비는 1일당 10만원을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거창군결산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--- 지방자치법 -----</p> <p>-----</p> 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~②(생략) ③-----지방자치법 -----</p> <p>-----</p> <p>제7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①(생략) ②지방공기업법 ----- 지방공기업법 -----</p> <p>제9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 지방자치법 시행령-----</p> <p>-----</p> <p>제13조(지급기준)위원의 일비 또는 여 비는 거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·회기 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되, 일비는 동조례에 의거 회기수당에 준하여 지급한다.</p>	<p>거창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 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--- 「지방자치법」-----</p> <p>-----</p> <p>제3조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----- 「지방자치법」-----</p> <p>-----</p> <p>제7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①(현행 과 같음) ② 「지방공기업법」----- 「지방공기업법」-----</p> <p>제9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-----</p> <p>-----</p> <p>제13조(지급기준)여비는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일비는 1일당 10만원을 지급한다.</p>